

국제 아동 탈취에 관한
연례 보고서
2022

미국무부

국제 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2022 년 5 월

손과 데이비드 골드만

2014 년 국제 아동 탈취 방지 및 귀환 법률

에 의거하여 만들어졌음

22 U.S.C. §9111, ET SEQ

미국무부

국무장관

워싱턴 DC 20520

국무 장관으로 부터의 메세지

읽는이 에게,

미국무부는 미국 시민, 특히 우리의 가장 연약한 시민 - 어린이 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는데 다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국제 부모 아동 탈취 사건을 해결하거나 방지하고 1980 년 10 월 25 일의 국제 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협약) 아래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미합중국의 노력을 리드하는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부서내에서 영사 업무 부서의 아동 문제 사무소가 협약을 위한 미합중국의 중앙당국 역할을 합니다. 사무소의 사명감을 가진 직원들은 국무부, 우리의 부서간 파트너, 해외 직원들, 그리고 국제 부모 아동 탈취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한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가까운 관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약이, 적절히 적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국제 부모 아동 탈취를 해결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를 제공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협약은 간단명료한 명제에 기반하여 작동합니다: 그것은 국제 아동 탈취에 연루된 아동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당국자가 양육권 문제를 가장 잘 결정할 수 있는 그 또는 그녀의 상거소지국에 빠르게 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의 대사관과 영사관과 함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외국 정부가 협약에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그들의 협약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정부와 협의합니다. 2021 년에, 우리는 우리는 세이첼레스를 새로운 협약국으로 환영하였고, 세이첼레스의 중앙당국과 양국간의 국제 아동 탈취를 방지하고 해결하는것과 관련하여 지속되는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고, 협약국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그들의 다짐을 저버리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국가들이 협약 의무를 준수하도록 기술적인 도움을 통해 지원하고 독려하는 한편, 그와 동시에 이 보고서가 증명하듯이 그들의 책임을 묻습니다.

코비드-19 와 관련한 전지구적 팬데믹이 우리의 노력을 특별히 더 어렵게 하고 있지만, 이 보고서에 나와있는 각국 및 탈취 및 면접 사건과 관련된 모든 가족들은 이 팬데믹과 그 확산을 막기위한 국가들의 조치로 인해 어느정도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어린이들을 만나거나 법정 출석을 위해 건강의 위협을 감수하며 여행을 했던 부모들은 건강 위험 뿐만 아니라, 관료적 지연, 법원

폐쇄, 비행편 취소, 여행 제한, 그리고 도착했을 때의 격리 의무등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국가의 중앙당국은 아동을 위한 중요한 이 문제를 2 년째 화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심문 기일 또한 가끔 직접 대면 보다 화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불이행 패턴을 보여주는 국가 목록을 비롯한 국가의 수행 평가는 2014 년의 손과 데이비드 골드만 국제 아동 탈취 방지 및 귀환 법률(법률)에 정의된 기준을 사용하며, 그 국가의 이행 방법과 광범위한 코비드-19 영향을 구분하고자 노력합니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2021 년에는 일부 국가들이 이 법률에 정의된 불이행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15 개의 국가를 지정합니다.

우리는 국제 부모 아동 탈취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강화시키는데 참여한 아동들과 가족들에게 빛을 지고 있습니다. 저와 아동 문제 사무소 및 전 세계의 대사관, 영사관 동료직원들은 이들 국가들이 더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협약국가의 경우 그들의 법률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독려하는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의회, 부모, 변호사, 판사, 그리고 사법 집행관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친애하는,

안토니 J. 블링큰

국무장관

대한민국


국가 요약: 협약은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2013 이래로 체결되어있습니다. 2021 년에, 대한민국은 불이행 패턴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사법 집행관들이 반복적으로 탈취건에 대해 집행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패의 결과로, 협약 아래 탈취된 아동 반환 요청의 50 퍼센트가 12 개월 이상동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들 사건들은 1 년 7 개월간 미해결 상태로 있었습니다.

최초 문의: 2021 년에, 국무부는 대한민국으로의 탈취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 부모들로 부터 2 개의 최초 문의를 받았으나, 국무부로 완성된 청구가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 | 사건 | 아동 | 사건 | 아동 |
|--------------------|------|------|--------|------|
| | 2020 | 2020 | 2021 | 2021 |
| 연초에 진행 중이었던 탈취 사건 | 4 | 4 | 5 | 7 |
| 새로운 탈취 사건 | 3 | 5 | 1 | 1 |
| 총 탈취 사건 | 7 | 9 | 6 | 8 |
| 한 해 동안 해결된 탈취 사건 | 2 | 2 | 3(50%) | 3 |
| 한 해 동안 종결된 탈취 사건 | 0 | 0 | 0(0%) | 0 |
| 연말에 여전히 진행중인 탈취 사건 | 5 | 7 | 3(50%) | 5 |

중앙당국: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중앙당국은 협약 아래 탈취사건들의 해결을 촉진하는 건설적 관례를 갖고 있습니다.

| | 사건 | 아동 | 사건 | 아동 |
|-----------------------------|------|------|------|------|
| | 2020 | 2020 | 2021 | 2021 |
| 연초에 해외 중앙당국에 접수되어 있었던 탈취 사건 | 4 | 4 | 5 | 7 |
| 해외 중앙당국에 접수된 새로운 탈취 사건 | 2 | 4 | 1 | 1 |
| 해외 중앙당국에 그해 접수되어있는 총 탈취 사건 | 6 | 8 | 6 | 8 |
| 12 개월 이상 미해결된 탈취 사건 | 2 | 2 | 3 | 5 |
| 연말에 미해결된 사건 | 33% | | 50% | |



자발적 반환: 협약은 중앙 당국이 “자발적인 아동 반환을 확보하거나 사건의 우호적 해결을 불러오기 위한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사용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한개의 탈취 사건이 자발적 방법에 의해 해결되었습니다.

위치 파악: 능력있는 관료들이 협약 청구가 접수되고 난 후, 정기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아동을 찾기 까지 1 주일 이하가 걸렸습니다.

사법 관료: 대한민국의 사법 관료들은 정기적으로 협약 사건들의 어린이들을 반환하기를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건들은 한국 사법 관료들과 1 년 이상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협약 사건의 아동을 돌려주기를 명령하였으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다수의 집행 절차들이 지연을 야기하였습니다.

집행: 대한민국의 법원이 협약 아래 아동들의 반환을 명령하였으나, 집행을 위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고, 이것은 2021 년 12 월 31 일 기준으로 2 년 이상 정체되어있는 사건을 포함하였습니다. 한 개의 사건 (33 퍼센트의 미해결 사건에 기여하는) 은 법 집행관이 반환 명령의 집행에 실패하였고, 12 개월 이상 동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남겨진 부모는 반환 명령의 집행을 위한 법 절차에서 몇 달의 시간을 보내어야 했고 이것은 반환 지연을 야기하였습니다. 탈취 부모가 자발적으로 협약 아래의 반환 명령에 따라 주지 않았을 경우, 헤이그 협약의 판결은 2021 년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불이행 패턴에 기여하였습니다.

국무부의 의견: 국무부는 한국 관료들과 우려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심도 높은 대화를 계속할 것입니다.